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황인구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7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9월 9일

발 의 자 : 황인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상진, 임만균, 이호대,
김생환, 양민규, 전병주,
이석주, 김수규, 최기찬,
이동현, 권순선, 김용연,
김기덕, 문영민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16.2.3.)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6. 2. 3.)에 따라 근거 법령 명칭 변경(안 제14조제1항, 안 제1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공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공급에 관한” 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7호 중 “「학교보건법」” 을 “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한다.

제15조제2항제11호 중 “「학교보건법」” 을 “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하고, “시·도학교보건위원회” 를 “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” 로 한다.

제21조의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시행에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<u>공급에 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4조(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·건축·환경·교통·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(이하 “시통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「<u>학교보건법</u>」에 따른 교육 환경에 대한 평가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급에 관한</u> ----- -----.</p> <p>제14조(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<u>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-----</p>

